

【문3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이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
- ② 저당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개시결정 전의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투지 않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별소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 ③ 개시결정 후의 절차상의 위법, 즉 매각부동산의 가격평가 절차나 최저매각가격결정절차 또는 매각준비단계에서의 매각기일공고·통지 절차 등에 관한 위법사유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 ④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탓에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있다.
- 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 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경우 국내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과 회사설립의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한다.
- ③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각종 첨부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한 때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37】 민법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 ③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피선임자의 취임 승낙은 필요 없다.
- ④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상항고로써만 불복이 가능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 ⑤ 임시이사의 지위는 정식의 이사와 동일하지만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문38】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주식회사의 분할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증가의 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 ③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상업등기부의 기재는 모두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을 뿐 법률상 추정력을 갖지는 못한다.

【문3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는 신주인수권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등기기간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기산한다.
- 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가 전부상환 또는 전부매입 소각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 ③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은 채 사채가 상환 또는 소각되면 그 행사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도 소멸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의 변경에 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사채권자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결의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사채권자의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40】 유한책임회사와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나,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 ②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 ③ 유한책임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설립등기시 이를 등기사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 ⑤ 유한책임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문41】 민사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②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③ 임시총회 소집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④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⑤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문42】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에 한해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자증명서의 폐지 등의 청구는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회사의 대표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회사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등의 전자신청시에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작성자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

【문43】 등기의 경정과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당사자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각하사유와 상관없이 등기당사자는 각하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 ⑤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첨부서면 외의 다른 서면을 제출받아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 있다.

【문44】 주식회사의 임원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는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 ③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그 등기를 한다.
- ④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할 수 없다.
- ⑤ 집행임원을 둔 회사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였다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45】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신청으로 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 ②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③ 법원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회사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상업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더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문46】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의장의 결정, 집행임원의 임기와 임기연장,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정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 ②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결과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있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감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⑤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좌수표로서 납입한 때에는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문47】 주식회사의 해산과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존립기간 만료 이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에는 존립기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존립기간 폐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파산하여 파산의 등기와 파산관재인인의 등기를 촉탁 받은 경우 등기관은 회사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③ 등기관은 해산간주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고 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존립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는 해산한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그 회사의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 ⑤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48】 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회사는 정관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않은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임한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 설립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 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문49】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하지만, 그 부여의 취소는 이사회 결의로도 할 수 있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회사도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⑤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된 자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50】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주식분할을 할 때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가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주권 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액면주식의 분할의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주식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자본금 전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하여야 한다.
- 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할 수 있다.